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인천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산학융합원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함
(안 제2조)
- 나. 융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이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jaemo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석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6
----------	-----

발의연월일 : 2017. 2. 1.

발 의 자 : 최석정·노경수·황인성

임정빈 의원

(찬성자: 3 명)

1.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인천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산학융합원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함(안 제2조)
- 나. 융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4조)
- 라. 시장이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민법」 제32조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22조의5

나. 비용추계서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인천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합원의 설립) 인천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3.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4.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민법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 수 있는 등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부합하는 항공 산업분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인천시가 인하대학교와 IBITP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동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MRO 사업 지원으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 시설을 건립 지원하는 사업임

나. 추계 결과

- 2016.12.12.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20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시비와 인하대학교 부담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재원조달방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국비지원금 120억원, 시비 45억원, 인하대학교 2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0억원 (기부금)의 지원금으로 사업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권혁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 년도 (‘16.10.~’17.2.)	2차 년도 (‘17.3.~’18.2.)	3차 년도 (‘18.3.~’19.2.)	4차 년도 (‘19.3.~’20.2.)	5차 년도 (‘20.3.~’21.2.)	계
세입							
	소계						
세출	항공산업 산학융합 지구조성 사업	3,000,000	1,500,000				
	소계	3,000,000	1,500,000				
재원 조달		18,000,000	14,5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38,500,000
국 비		3,000,000	3,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2,000,000
시비	소 계	3,000,000	1,500,000				4,500,000
	일반회계	3,000,000	1,500,000				4,5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2,000,000					2,000,000
기 타 (인천공항 기부금)		10,000,000	10,000,000				20,000,000

※ 기타(인천공항 기부금) : 우리시로 기부될 시 세출 예산으로 편성